YouTube 한국인터넷기업협회

NAVER TV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nternational Seminar on
Online Platform Regulatory Trends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2023년 9월 6일(수) ,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 희 곤 ICT법경제연구소 ICT LAW & ECONOMY INSTITUTE

주관 K internet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Program

■ 세부일정

시간	내용	
10:00~10:10	개회사 및 환영사	
10:10~10:30	축사	
10:30~10:3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Session 1] 주제발표		
10:35~11:05	발표 1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티볼트 슈레펠** 교수(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
11:05~11:35	발표 2	EU Digital Markets Act(DMA) and its implications on security and privacy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교수(서리 대학교)
11:35~11:40	장내 정리	
[Session 2] 종합 토론		
11:40~12:30	좌장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12:30~12:40	질의응답	
12:40	폐회	

Contents

발표1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1

티볼트 슈레펠 교수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

발표2 EU Digital Markets Act(DMA) and its implications on security and privacy 21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교수 (서리 대학교)

토론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토론

- 신영선 고문 (법무법인 율촌) ····· 37
-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43
- 오규성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49
-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 55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를 주관해주시고 주최해주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ICT법경제연구소에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발제를 맡아주신 티볼트 슈레펠 교수님과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교수님 등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온라인 소비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계 기관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적 역량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칫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법은 규제가 아니라 규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이 아니라, 자율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같이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규제의 대못이 곳곳에 박혀 있으면 혁신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와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되, 다른 영역에서는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적 아이디어가 진입장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사라지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성과가 도출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기를 희망하며, 저 또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소중한 협력의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6일

국회의원 **김 희 곤**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II)”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희곤 의원님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홍대식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먼 길을 와주신 티볼트 슈레펠 교수님과 미콜라이 바르텐체비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맡아주신 신영선 고문님, 신영수 교수님, 오규성 변호사님, 최경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출시는 우리의 소통, 정보 교류, 그리고 경제 활동 등에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창업가와 기업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하여 혁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스며들면서 온라인 플랫폼 내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유럽식의 사전 규제 논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EU의 DMA식 사전규제 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의 산업 혁신 동력 약화와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더 나은 미래 디지털 경제를 위한 양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6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 성 호**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II)」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마련해주신 김희곤 의원님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디지털 혁명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생활과 경제, 소통의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문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규제와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는 꾸준히 주목받는 이슈로 제기되어 온 바, 오늘의 자리를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최신 동향과 관련 법규 및 정책 역학,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찰하고, 보다 나은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국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6.

국민의힘 당 대표 **김 기 현**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희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요 콘텐츠와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하는 소비 습관을 갖게 되면서,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자국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활성화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왔고,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존재합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이어 또 다른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발효를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디지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제는 한 번 신설하고 도입하면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시대에서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혁신의 기회를 잃고 국내 시장을 글로벌 빅테크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외 사례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의 편익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순기능을 이어나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 재 옥**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II)」라는 제하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관계자분들과 존경하는 김희곤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희곤 의원님은 훌륭한 정무감각과 온화한 성품으로 누구보다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계십니다.

특히, 정무위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셨고, 21대 국회서 정무위 간사까지 역임하셔서 온라인플랫폼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와 관련한 많은 현안을 다루고, 해결해 오신 전문가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티볼트 슈레펠 교수님,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교수님, 사회를 맡아주신 홍대식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신영선 고문님, 신영수 교수님, 오규성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온라인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생활의 대부분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플랫폼 산업이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각국의 상황에 맞춰 제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DMA(디지털시장법)를 통해 사전적 규제를 적용하려고 있는 한편,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안들이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만의 해답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내 플랫폼 시장의 성장동력을 빼앗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II)」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6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 대 출**

발표 1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티볼트 슈레펠 교수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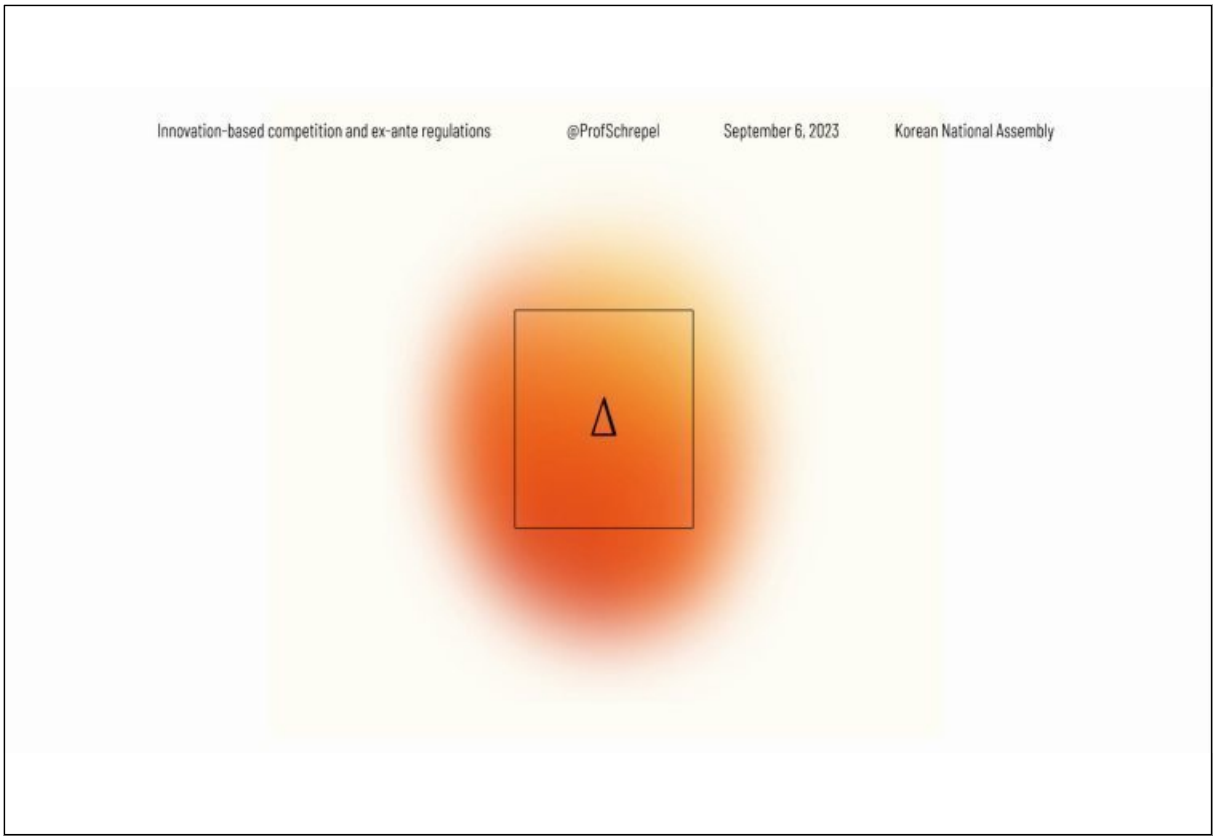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September 6, 2023
Korean National Assembly
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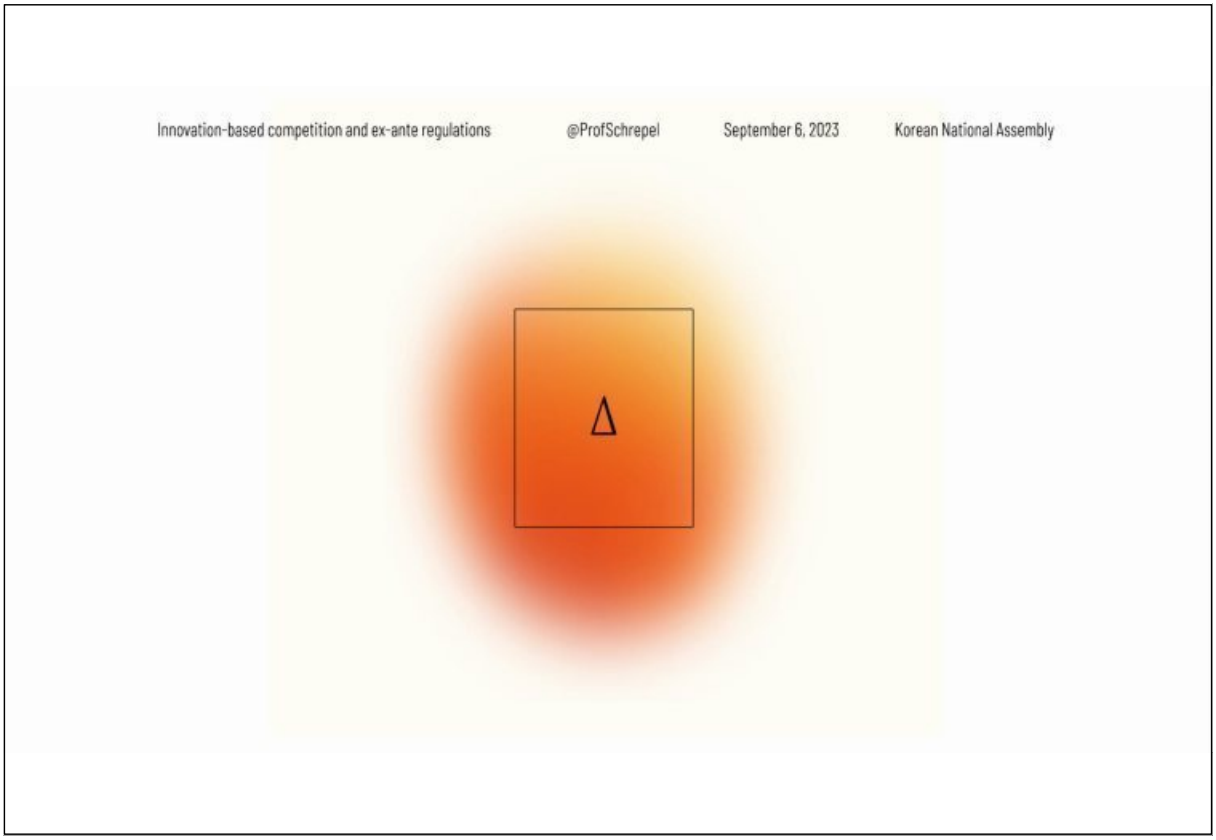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September 6, 2023
Korean National Assembly
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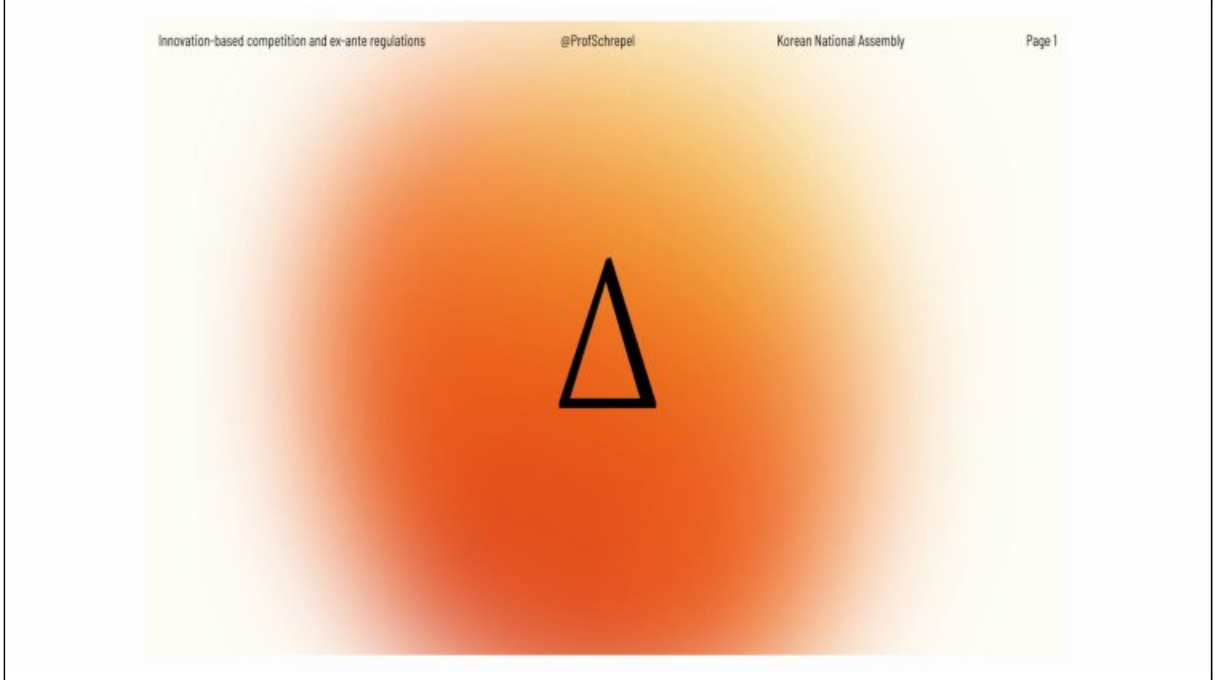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2
1. OBSERVATIONS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2
1. 현상 (現狀)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3
Competition stimulates innovation.
But equally, innovation stimulates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innovation is the main competitive driver.
Schrepel, Thibault, "A Systematic Content Analysis of Innovation in European Competition Law ," forthcoming (2023)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3
경쟁이 혁신을 촉진시키는 만큼,
혁신 또한 경쟁을 촉진시키므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chrepel, Thibault, "A Systematic Content Analysis of Innovation in European Competition Law ,"
출간 예정 논문
(2023)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4
A dynamic competition approach should seek to **bring innovation faster**
More innovation = more competition -> innovation "accounts for at least 50% of economic growth" from 1995 to 2013
(OECD, The Innovation Imperative, OECD Publishing Paris, 2015, p. 19)
This should be the main objective of competition policy in all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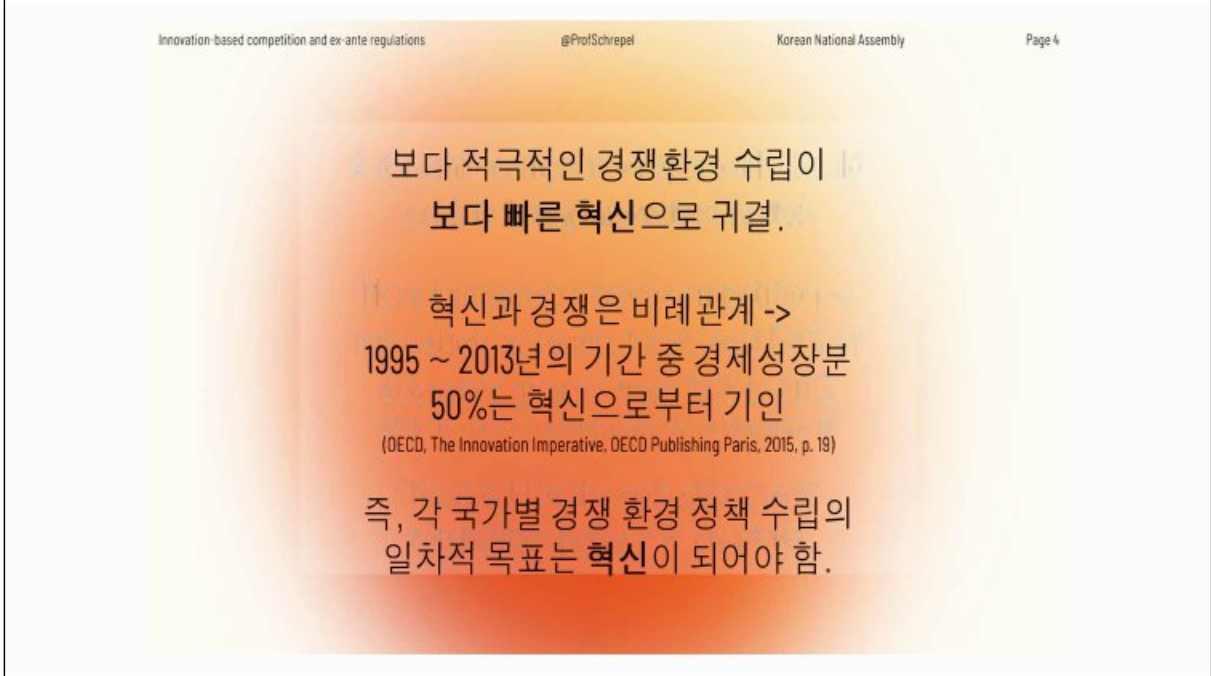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4
보다 적극적인 경쟁환경 수립이
보다 빠른 혁신으로 귀결.
혁신과 경쟁은 비례관계 ->
1995 ~ 2013년의 기간 중 경제성장분
50%는 혁신으로부터 기인
(OECD, The Innovation Imperative, OECD Publishing Paris, 2015, p. 19)
즉, 각 국가별 경쟁 환경 정책 수립의
일차적 목표는 **혁신**이 되어야 함.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5
2. EX ANT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5
2. 사전 (事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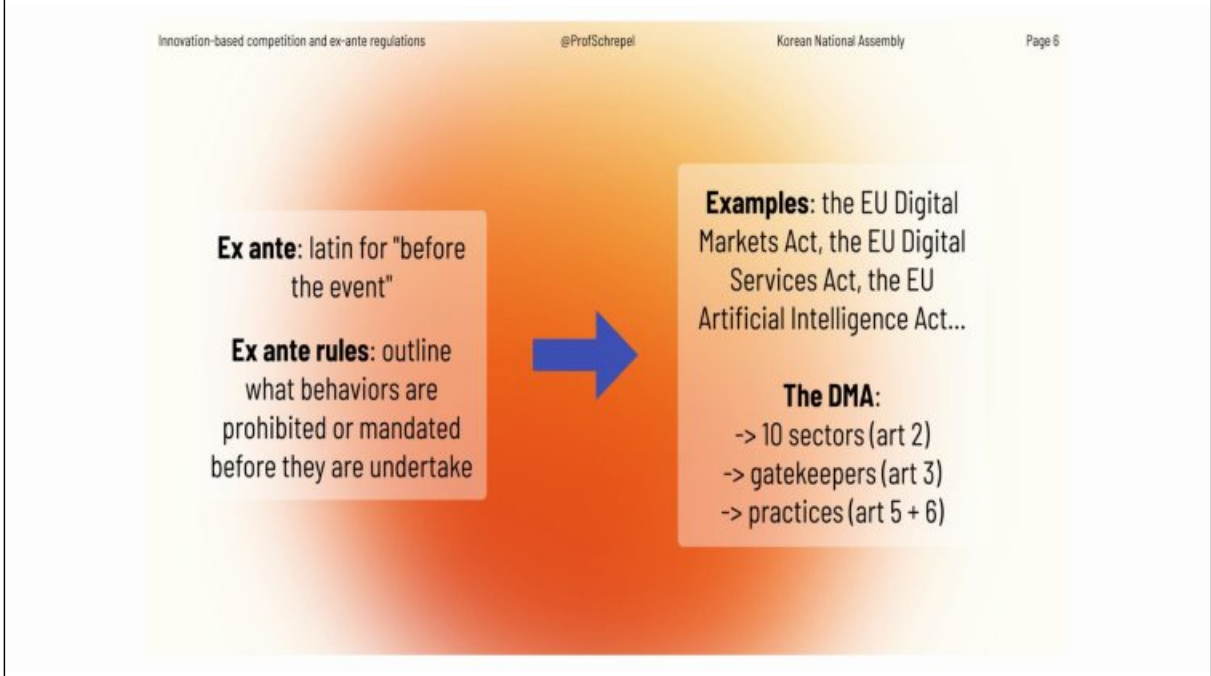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6
Ex ante: latin for "before the event"
Ex ante rules: outline what behaviors are prohibited or mandated before they are undertake
Examples: the EU Digital Markets Act, the EU Digital Services Act,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e DMA:
-> 10 sectors (art 2)
-> gatekeepers (art 3)
-> practices (art 5 + 6)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6
Ex ante: 事前의 라틴어 표현.
Ex ante rules: 사전(事前)적으로 금지 또는 의무되어야 하는 행위의 정의
예시: EU 디지털 시장법, EU 디지털 서비스법, EU 인공지능법 등
DMA의 경우:
-> 10개 섹터 (제2조)
-> Gatekeeper (제3조)
-> 실행안 (제5, 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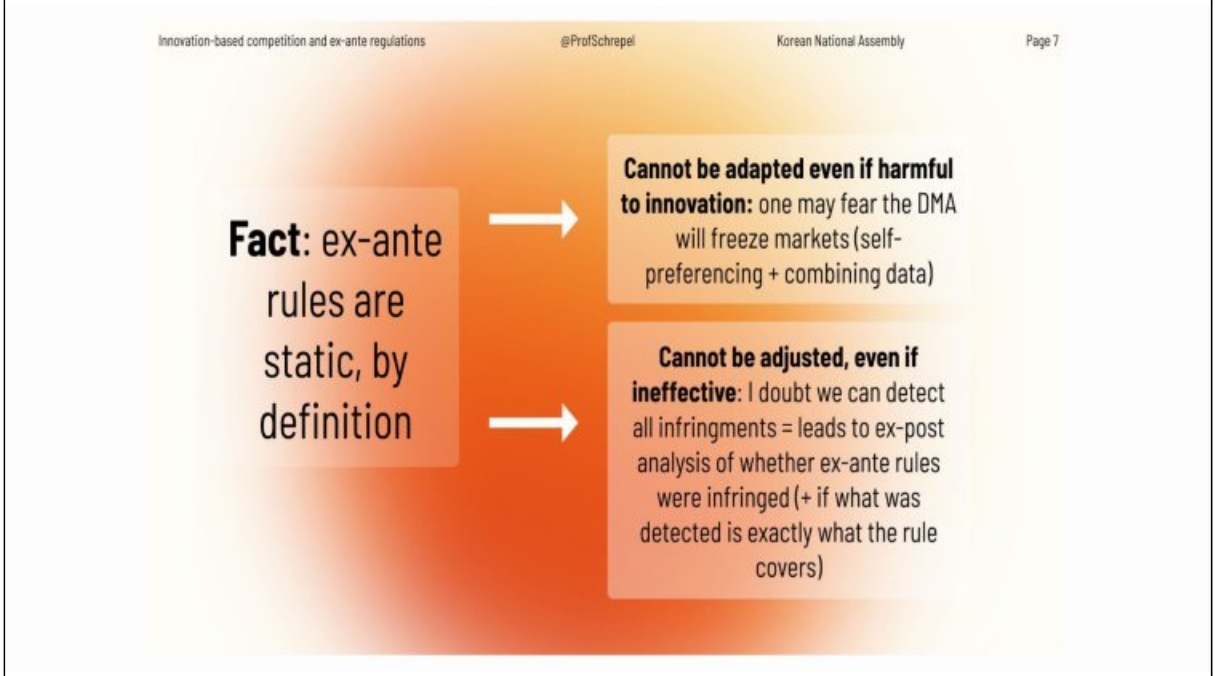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7
Fact: ex-ante rules are static, by definition
Cannot be adapted even if harmful to innovation: one may fear the DMA will freeze markets (self-preferencing + combining data)
Cannot be adjusted, even if ineffective: I doubt we can detect all infringments = leads to ex-post analysis of whether ex-ante rules were infringed (+ if what was detected is exactly what the rule co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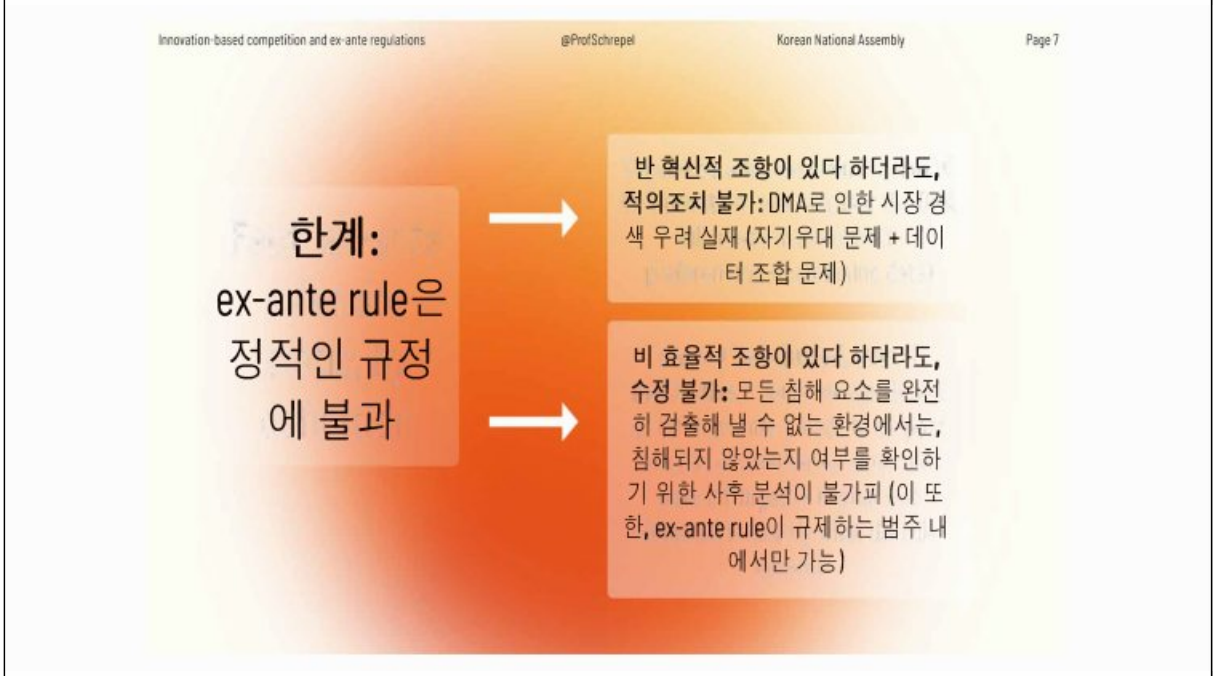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7
한계: ex-ante rule은 정적인 규정에 불과
반 혁신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의조치 불가: DMA로 인한 시장 경색 우려 실재 (자기우대 문제 + 데이터 조합 문제)
비 효율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수정 불가: 모든 침해 요소를 완전히 검출해 낼 수 없는 환경에서는,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분석이 불가피 (이 또한, ex-ante rule이 규제하는 범주 내에서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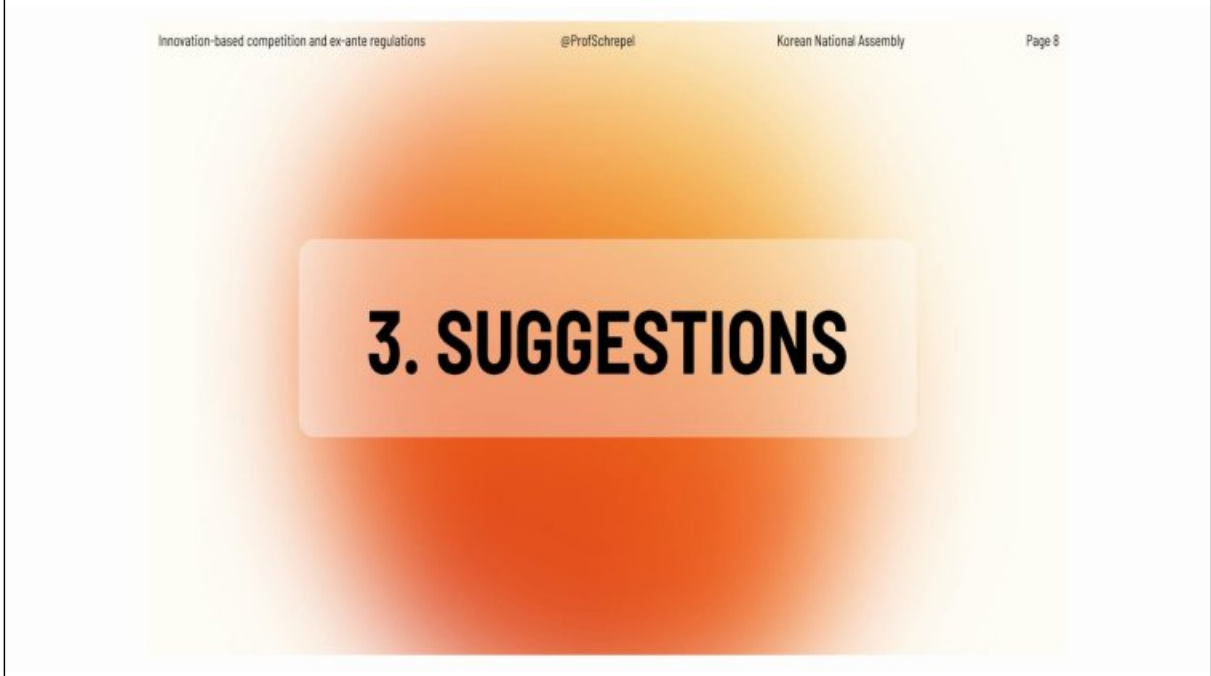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8
3. SUGGESTIONS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8
3.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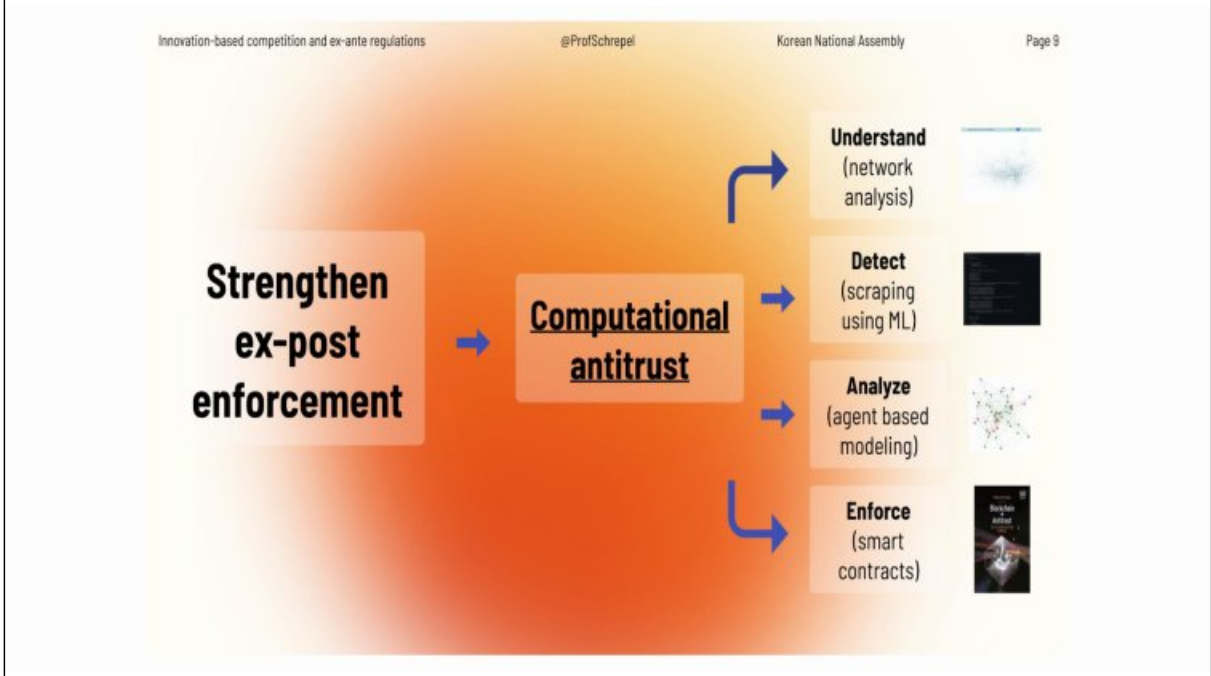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9
Strengthen ex-post enforcement
Computational antitrust
Understand (network analysis)
Detect (scraping using ML)
Analyze (agent based modeling)
Enforce (smart contracts)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9
사후 집행력 강화
전산 반독점 (Computational antitrust)
이해도 제고 (네트워크 분석)
검출력 제고 (머신러닝 기반 스크랩핑)
분석력 제고 (행위자 기반 모형)
집행력 기반 (적정 계약 기반)

https://bit.ly/antitrust2

- **Abuse of dominance**:
  - detection of abusive contract clauses (e.g. Poland)
  - monitoring terms and conditions of platforms (e.g. Luxembourg)
  - identifying potential harms through analyzing online choice architectures (Poland, UK)
- **Cartels**:
  - real-time price monitoring (e.g. Armenia, Colombia, Greece)
  - analysis of data from instant messaging platforms (e.g. Taiwan, Türkiye)
  - identifying collusion risks based on market structures (e.g. Chile, Spain)
- **Mergers**:
  - Fully digitized merger notifications (e.g. Mexico)
  - Document generation tools for redacting merger documents (e.g. Singapore)
  -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potential effects of mergers (e.g. Taiwan)
  - Tracking mergers through screening news articles (e.g. UK)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0

https://bit.ly/antitrust2

우월적 지위 남용
- 우월적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는 계약 조항 검출 (폴란드)
- 플랫폼 계약 조항 모니터링 (룩셈부르크)
- 온라인 기반 On-line Choice Architecture 분석을 통한 위해요소 식별 (폴란드, 영국)

카르텔
- 실시간 가격 모니터링 (아르메니아, 콜롬비아, 그리스)
- 메신저 플랫폼 유래 데이터 분석 (대만, 튀르키예)
- 시장 구조에 기초한 담합 위험 식별 (칠레, 스페인)

합병
- 합병 공지 전수 디지털화 (멕시코)
- 합병 관련 문서의 신원정보 삭제를 위한 자동화 문서생성 툴 (싱가포르)
- 합병의 잠재 영향 식별을 위한 회귀분석 (대만)
- 뉴스 기사 스크리닝을 통한 합병건 추적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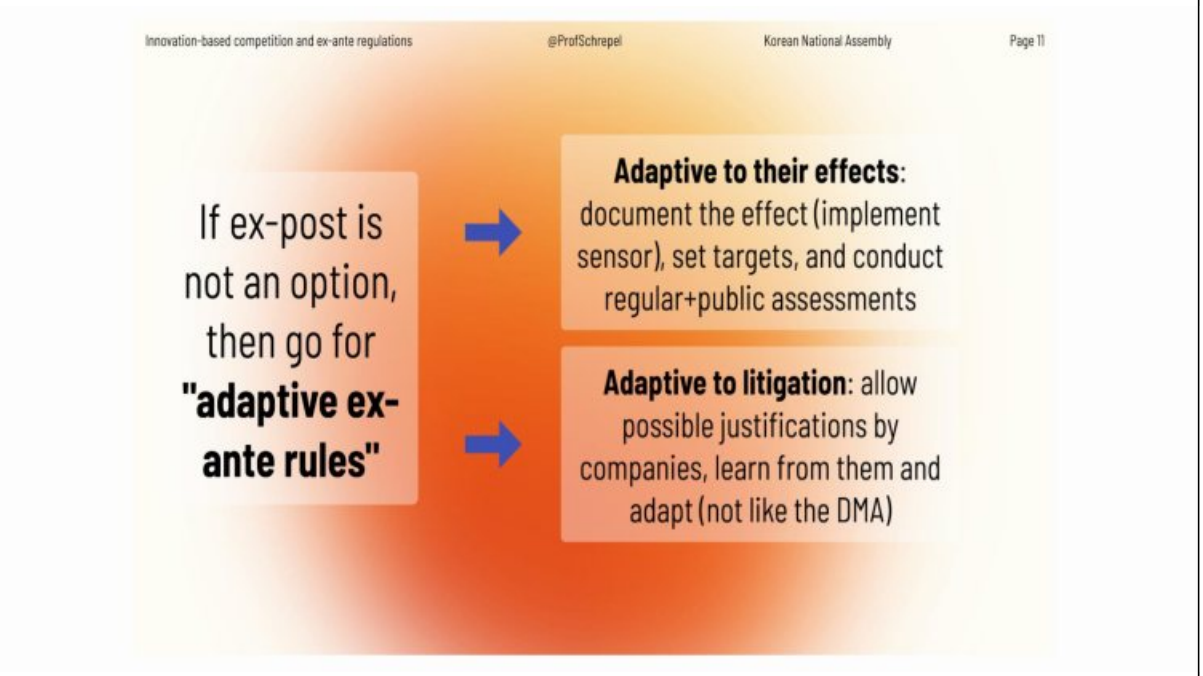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1
If ex-post is not an option, then go for "adaptive ex-ante rules"
Adaptive to their effects: document the effect (implement sensor), set targets, and conduct regular+public assessments
Adaptive to litigation: allow possible justifications by companies, learn from them and adapt (not like the D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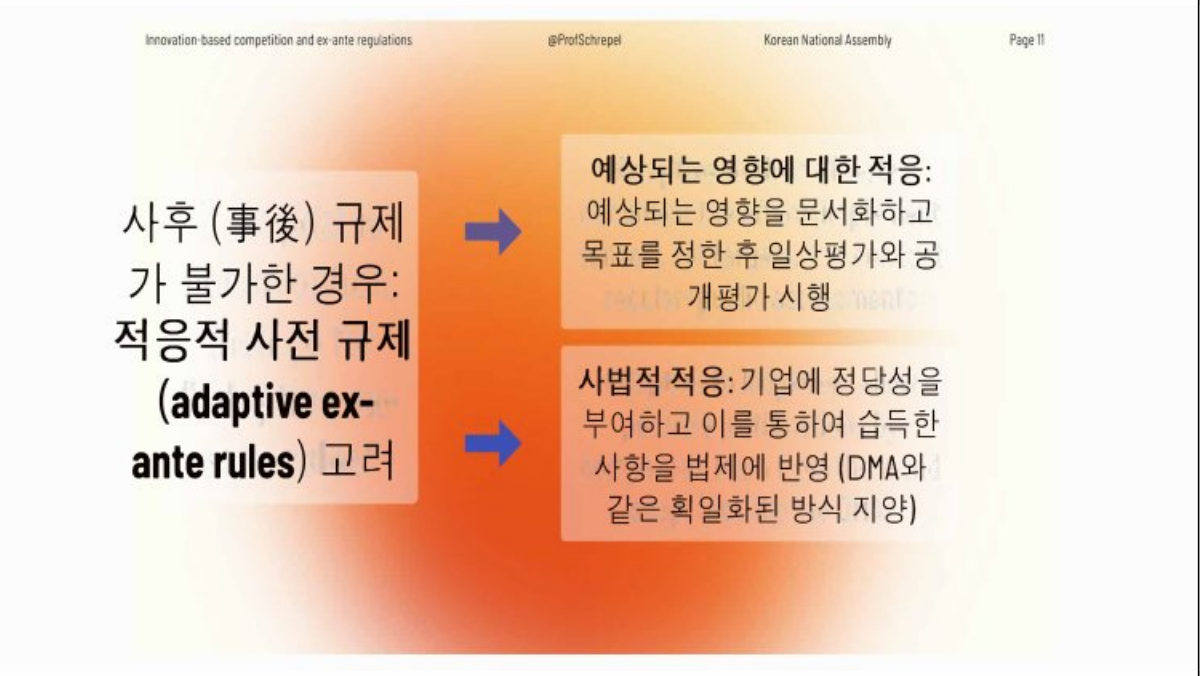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1
사후 (事後) 규제가 불가한 경우: 적응적 사전 규제 (adaptive ex-ante rules) 고려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적응: 예상되는 영향을 문서화하고 목표를 정한 후 일상평가와 공개평가 시행
사법적 적응: 기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습득한 사항을 법제에 반영 (DMA와 같은 획일화된 방식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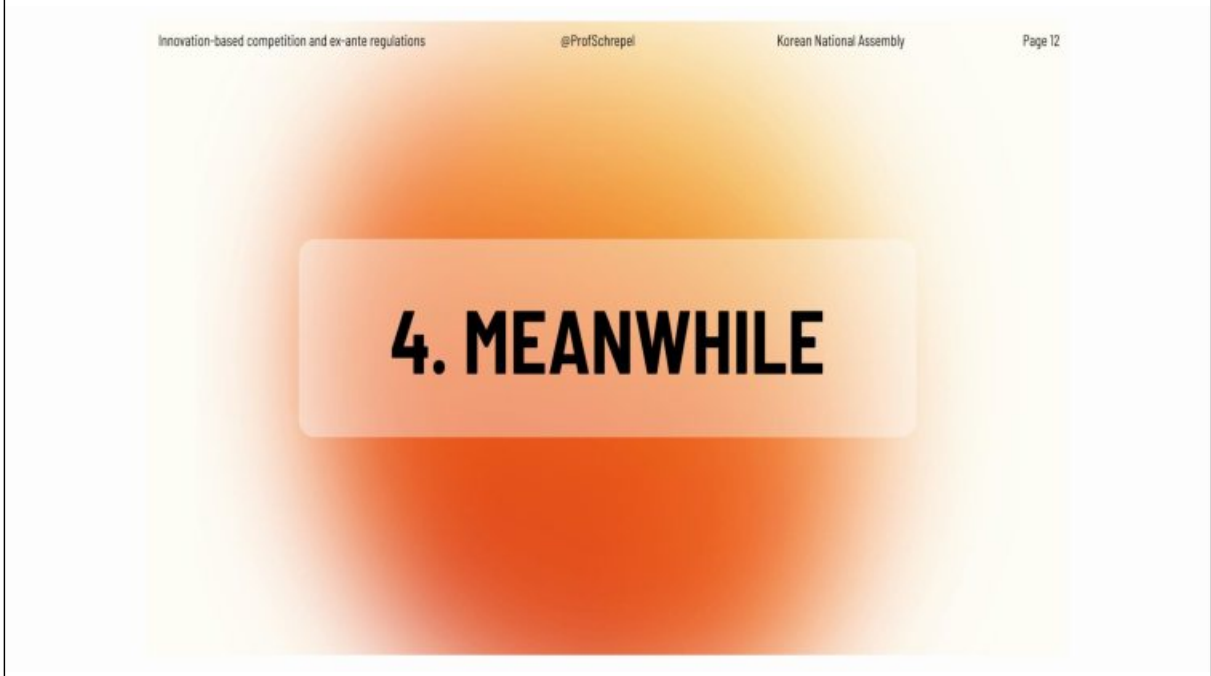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2
4. MEANWHIL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2
4. 첨언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3
Europeans will start publishing **empirical work on the DMA** (compliance no later than March 6,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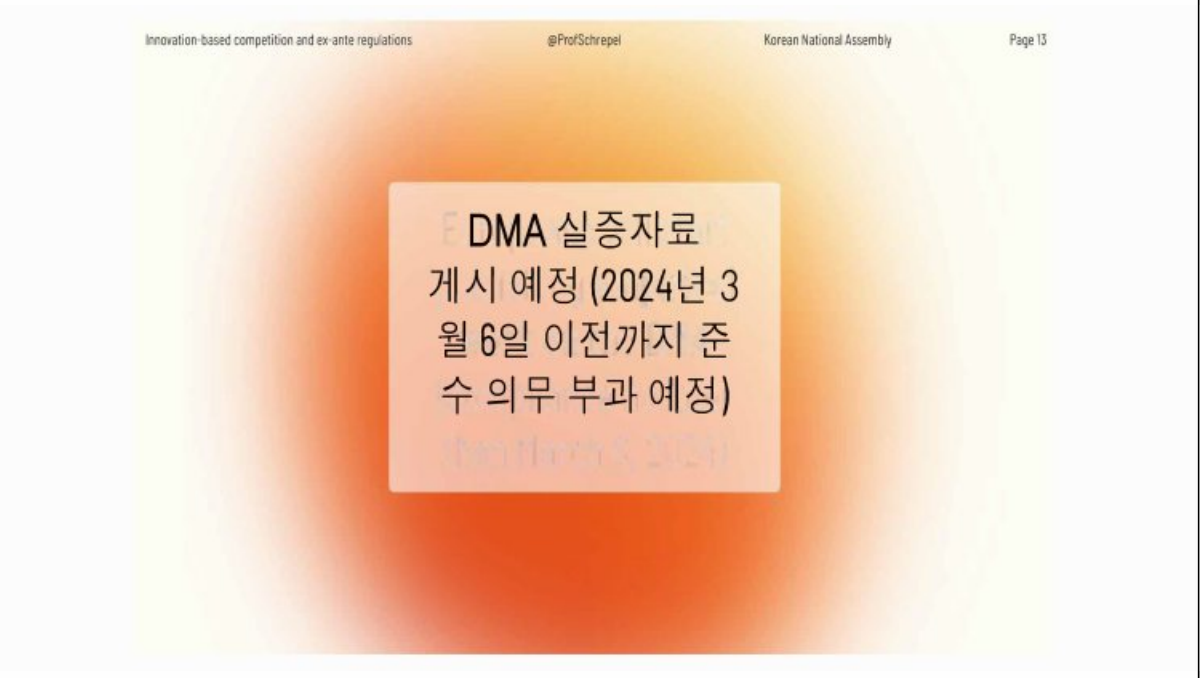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3
DMA 실증자료 게시 예정 (2024년 3월 6일 이전까지 준수 의무 부과 예정)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4
GDPR and the Lost Generation of Innovative Apps
Rebecca Janßen, Reinhold Kesler, Michael E. Kummer & Joel Waldfogel
GDPR induced the exit of about a third of available apps; and in the quarters following implementation, entry of new apps fell by half
source
Firms are geared toward efficiency **or** innovation = ex ante rules can at most bring efficiency (cost reduction measures and optimization of existing processes), but hardly innovation (focus on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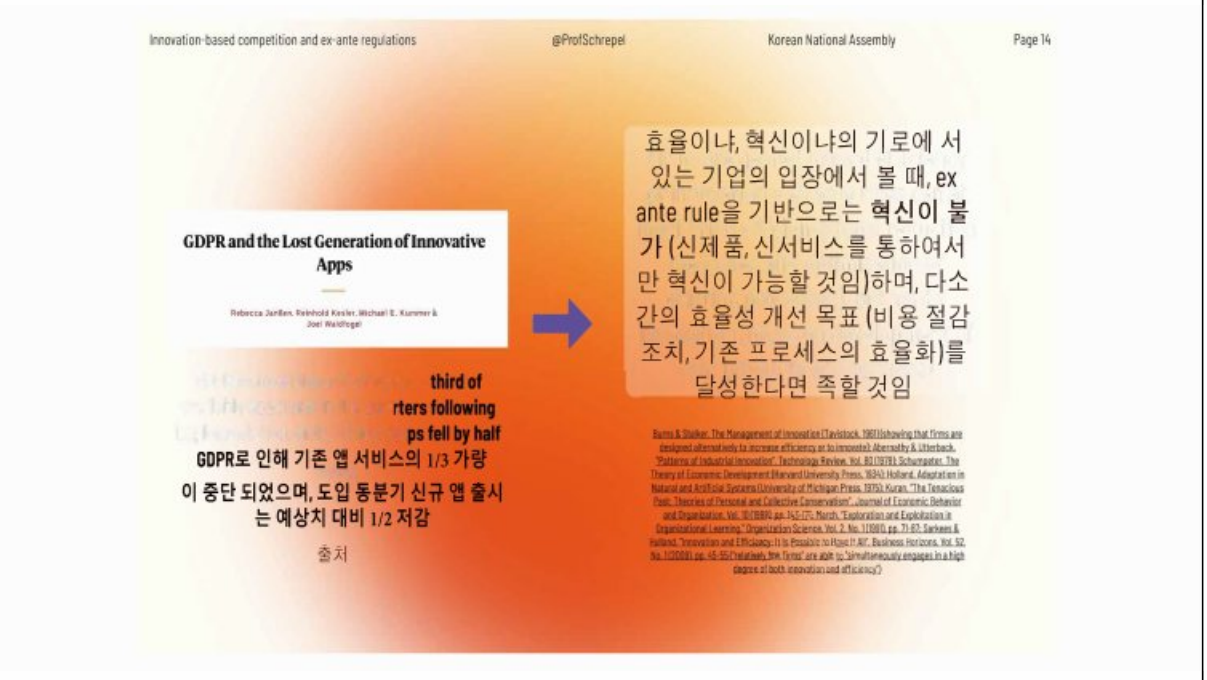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4
GDPR and the Lost Generation of Innovative Apps
Rebecca Janßen, Reinhold Kesler, Michael E. Kummer & Joel Waldfogel
third of
rters following
ps fell by half
GDPR로 인해 기존 앱 서비스의 1/3 가량
이 중단 되었으며, 도입 동분기 신규 앱 출시
는 예상치 대비 1/2 저감
출처
효율이냐, 혁신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ex ante rule을 기반으로는 **혁신이 불가** (신제품, 신서비스를 통하여서만 혁신이 가능할 것임)하며, 다소간의 효율성 개선 목표 (비용 절감 조치, 기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달성한다면 족할 것임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5
https://bit.ly/schrepel2023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5
https://bit.ly/schrepel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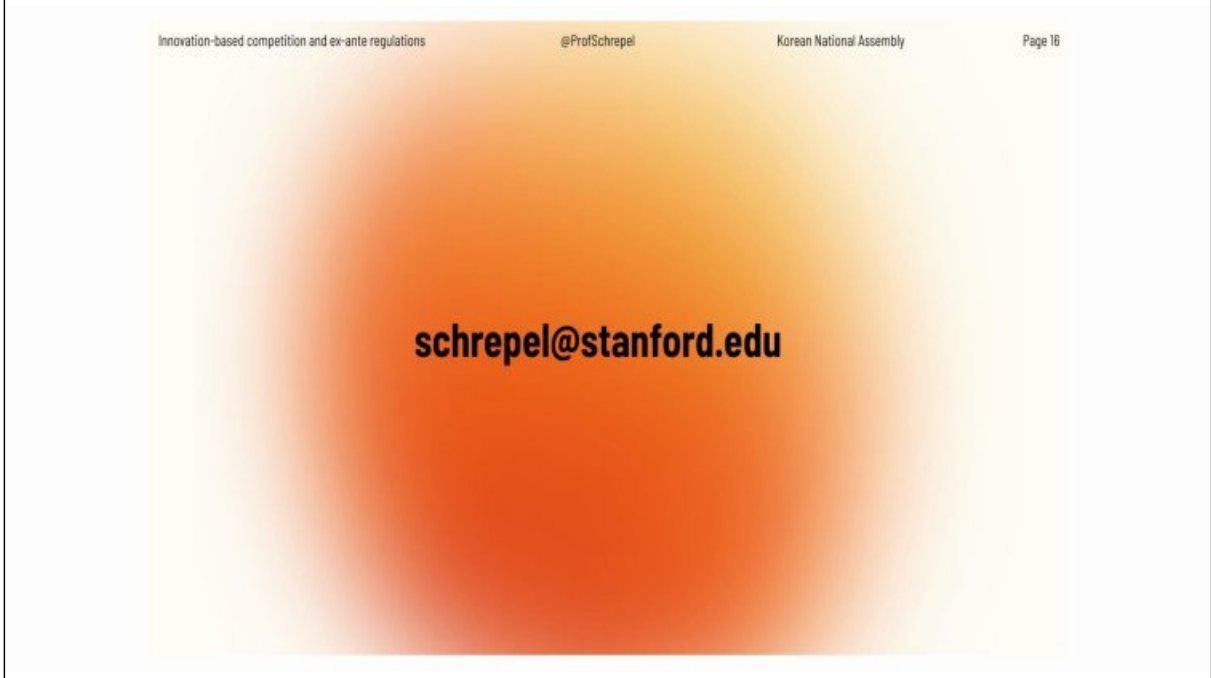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6
schrepel@stanford.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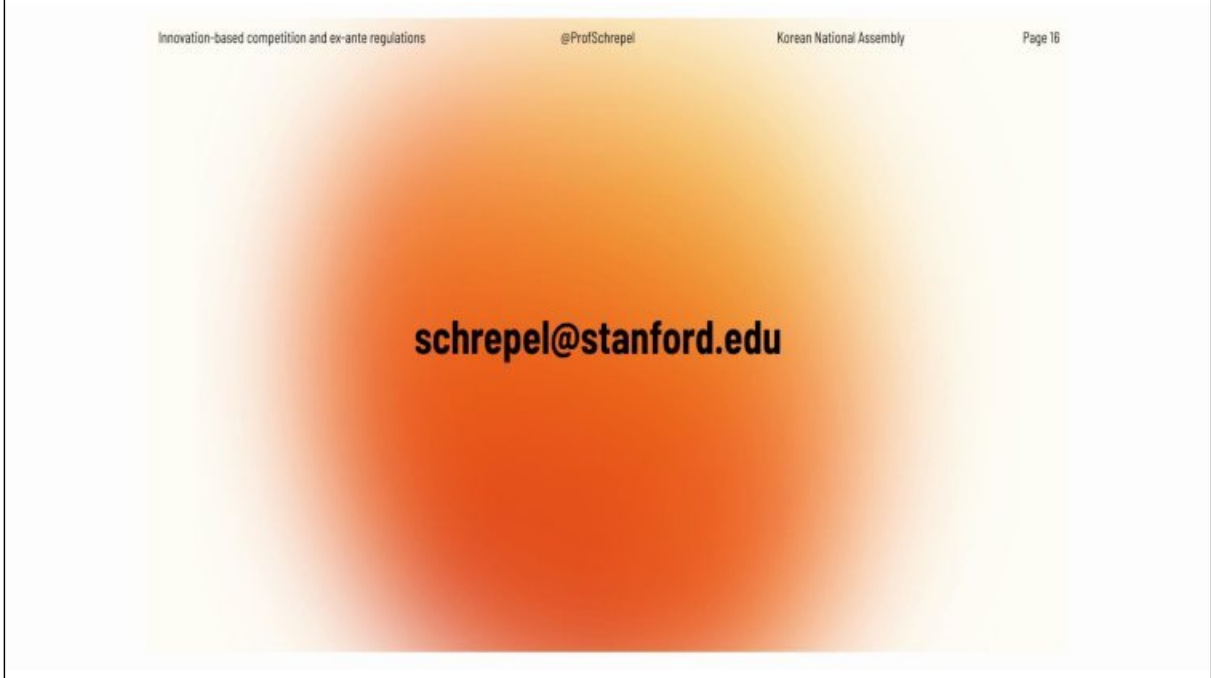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Korean National Assembly
Page 16
schrepel@stanford.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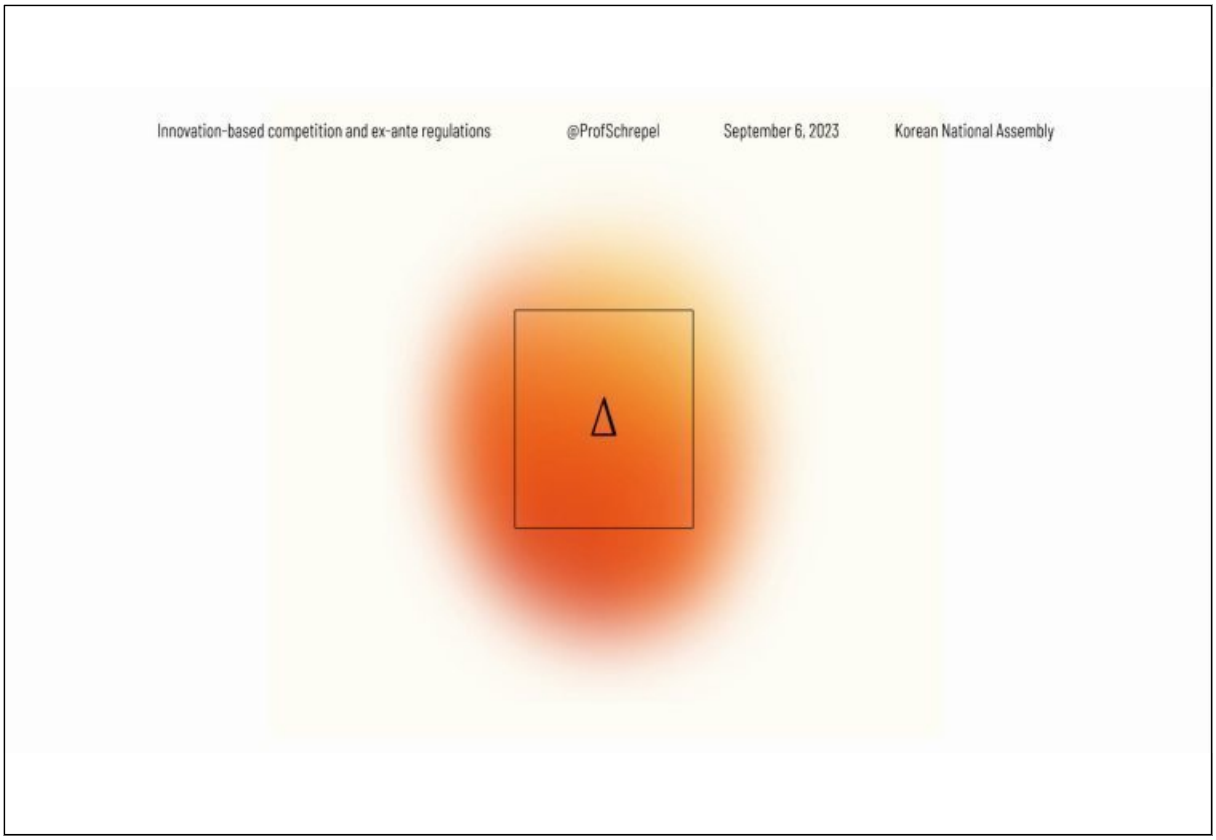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September 6, 2023
Korean National Assembly
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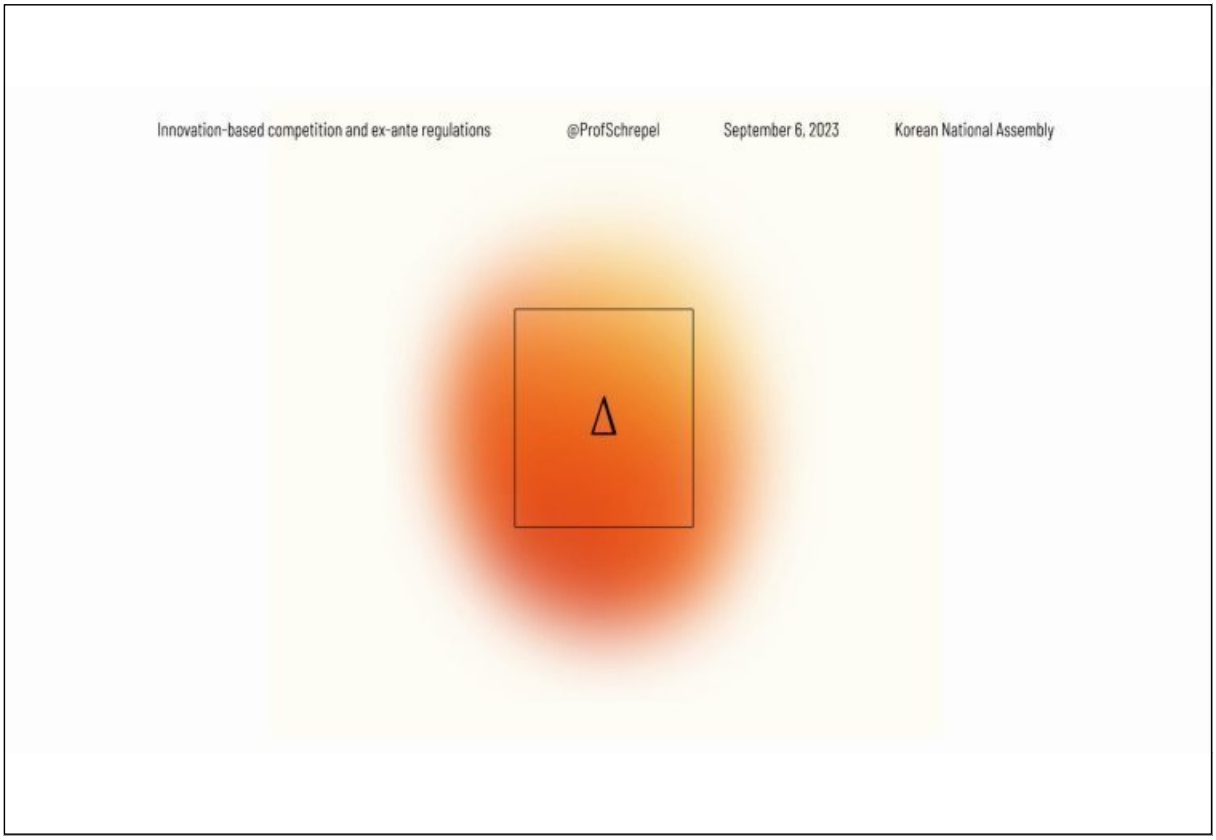
Innovation-based competition and ex-ante regulations
@ProfSchrepel
September 6, 2023
Korean National Assembly
Δ

발표 2

EU Digital Markets Act(DMA) and its implications on security and privacy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교수
(서리 대학교)

Privacy and security risks in regulating digital platforms: interoperability in the EU DMA

Dr Mikołaj Barczentewicz

University of Surrey and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디지털 플랫폼 규제 상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 EU 디지털시장법 (EU DMA)에 따른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Dr Mikołaj Barczentewicz

University of Surrey,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Could the DMA bring a new "Cambridge Analytica"?

Cambridge Analytica

facebook

DMA가 도입되어도 "Cambridge Analytica"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는가?

Cambridge Analytica

facebook

The DMA pursues economic goals

Interoperability is meant to promote competition

DMA가 지향하는 목표, 경제성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은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The DMA pursues economic goals

Interoperability is meant to promote competition

DMA가 지향하는 목표, 경제성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은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Complexity nexus: interoperability, privacy, security

One Protocol to Rule Them All?
On Securing Interoperable Messaging

Jenny Blessing[1] and Ross Anderson[1,2]

[1] University of Cambridge
[2] University of Edinburgh

한층 더 높아진 복잡성: 상호운용성, 프라이버시, 보안

One Protocol to Rule Them All?
On Securing Interoperable Messaging

Jenny Blessing[1] and Ross Anderson[1,2]

[1] University of Cambridge
[2] University of Edinburgh

Interoperability risks

1. Data sharing and data mining
2. Phishing and identity fraud
3. Security lags

Made even worse by the "Yes" click syndrome

상호운용성이 수반하는 위험

1. 데이터 쉐어링, 데이터 마이닝
2. 피싱, 신원도용
3. 보안 결함

무턱대고 "Yes"를 클릭하는 사용자 행태는 이와 같은 위험이
더욱 문제시 되는 요인.

Addressing the risks is a significant challenge

- Thinking of *real* users and *real* threats
- Ensuring enforcement of privacy and security laws
  - What if an attacker comes from an uncooperating country?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

- 실제 사용자와 실제 존재하는 위협을 상정하는 것이 중요
-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법률의 시행
  - 비협조국에 소재하는 공격자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The UK Open Banking example: the road not taken by the DMA

- High implementation costs and challenges
- Overseen by a special regulatory body
- Limitations in applying banking models to diverse digital services

영국의 오픈뱅킹 사례: DMA 이상의 조치가 필요

- 시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각종 난제
- 별도 규제 당국 수립
- 뱅킹 모델을 적용하는 것 만으로는 디지털 서비스를 다변화하는데 한계가 존재

Three interoperability mandates in the DMA

- A prohibition against restricting users from switching between and subscribing to software and services accessed using core platform services – Article 6(6)
- An obligation for gatekeepers to allow interoperability with their operating system or virtual assistant – Article 6(7)
- An obligation on the interoperability of number-independ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 Article 7

DMA의 상호운용성 3원칙

- 제6조6항 —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액세스 한 사용 또는 구독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제
- 제6조7항 — Gatekeeper는 운영체제 또는 또는 Virtual Assistant 의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화
- 제7조 — 번호독립 (number-independent) 상호통신 서비스 의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화

Privacy/security protections either inadequate or at risk of being watered down

- General reference to other laws (like the EU GDPR) — Article 8(1)
- Permission for gatekeepers to adopt measures "strictly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protect user privacy and security — Article 6(7), 7
- Level of security provided to end users "shall be preserved across interoperable services" — Article 7(3)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보호 장치의 부적절성, 실효성

- 제8조1항 — 타법 (EU GDPR) 참조에 그침
- 제6조7항, 제7조 — Gatekeeper에 의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보안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수준"에 할 수 있도록 허용
- 제7조3항 — 최종 사용자에 제공되는 보안 수준은 "당해 상호운용가능 서비스에 걸쳐"서만 보장 의무

Conclusions and takeaways

- Tension between some economic policy tools and privacy/security
- The DMA's authors clearly prioritised economic goals, acted as if privacy/security are "easy" or "already solved"
- This created significant uncertainty, and will require the courts to intervene — a feature of poor legislation

결론, 요점

- 경제성 관련 정책과 프라이버시, 보안관련 정책 간의 균형점
- DMA 제정의 일차적 목적은 어디까지나 경제성으로,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사안은 해결이 어렵지 않거나, 이미 해결된 것으로 치부
- 이는 입법 부실로,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법률인 만큼 법원 판단 개입 소지 불가피

종합 토론

좌 장 :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신영선 고문
(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규성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토론

1

신영선 고문
(법무법인 율촌)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토론문

신영선 고문 법무법인 율촌

요즘 경쟁법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플랫폼 이슈임.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플랫폼 업계는 입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림.

티볼트 슈레펠 교수님의 '혁신기반 경쟁과 사전규제'에 관한 발표 내용, 그리고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교수님의 'EU 디지털 시장법(DMA)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 내용 잘 보았음. 저는 오늘 슈레펠 교수님의 발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함.

1. EU의 플랫폼 관련 사전규제의 도입 배경 및 특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과 시장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의 집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EU가 대표적임.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EU 기능조약 제102조 위반을 이유로 총 82.5억 유로(한화 약 1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왔음. 그러나 최근 EU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사후적인 경쟁법 집행으로는 거대한 플랫폼사업자의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게 됨. 즉, 기존 경쟁법 규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사후적 행위규제로는 실질적인 경쟁의 회복이 어렵다는 것임. 그에 따라 EU는 2022년 사전(ex-ante)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제정하였고, DMA는 202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DMA는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입증 과정 없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거나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임. 경쟁당국이 사후에 행위의 효과를 분석하여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경쟁법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매우 강력한 규제임.

2. 사전규제의 문제점

양면시장, 직접 및 간접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피드백 보강 효과 등 플랫폼의 여러 특성상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임. 따라서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 입증이 필요 없는 사전규제의 유혹에 빠지기 쉬움. 그러나 사전규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사전규제는 폐해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금지하거나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행위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개별적 효과를 따지지 않으므로 ①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행위와 ② 경쟁제한 효과보다 효율성 등 편익이 더 큰 행위까지도 막을 수 있음. 따라서 적법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제1종 오류(false positive)를 범할 위험이 커짐. 특히 시장환경이 유동적인 플랫폼 산업의 경우에는 창의와 혁신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한국의 플랫폼 독과점규제 정책 방향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즉 갑을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독과점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TF 논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에 있음.

한국도 EU처럼 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입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림. 토종 플랫폼이 없는 EU는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을 견제할 목적에서 사전규제법을 만들었으나, 한국에는 유력한 국내 플랫폼들이 존재해 EU와는 다른 상황임. 참고로 거대 플랫폼이 모두 자국 기업인 미국에서는 발의되었던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모두 폐기된 바 있음. 그리고 한국에는 이커머스 분야와 같이 유효경쟁이 작동하는 분야도 많이 있어서 규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사전규제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음.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규제는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함.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논의되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의 경우 그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 사전적·획일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될 것임. 과도한 규제는 혁신과 경제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유의해야 함.

물론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슈레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인 법 집행(ex-post enforcement), 즉 현행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됨. 이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몇 건의 집행 사례가 축적되고 있음. 또한 올해 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활용할 수 있음. 다만,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현행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플랫폼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효율성 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경쟁제한 효과는 강조되어 있는 반면, 효율성 증대 효과는 너무 간단히 기술되어 있어 양 효과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조항 관련하여, DMA는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라고 할 뿐이고 자체 유통경로에서도 이를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좁은 최혜대우(narrow MFN) 조항은 인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플랫폼 독과점규제 정책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최근 한국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글이 1위를 하지 못한 한국 검색시장에서 네이버(55%)와 구글(35%)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 무엇보다 게임체인저가 될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플랫폼 시장은 대 격변기에 놓여있음. 챗GPT가 쇼핑·호텔 예약 같은 생활 밀착 분야에서부터 금융·학술·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한 확장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함. 이제 막 초거대 AI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래 시장을 통째로 내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한 것임. 이처럼 플랫폼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개별기업 차원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입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올해 5월부터 시행된 EU의 DMA 작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할 것임.

토론

2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토론문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회 내에서도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된 상태임.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논의 동향이나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EU의 DMA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시장획정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일반 경쟁법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EU DMA가 취한 접근방식 즉 법 적용대상 플랫폼 사업자들을 사전에 지정하려 한 점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사전지정 조치는 법적용 대상인 수범자를 미리 확정해 주게 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매우 역동적이고 변화의 주지가 짧은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규제기준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음. 또한 규제적 측면에서 지정여부는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극명하게 가르는 의미가 있음.

따라서 사전규제를 위한 적용대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도입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지정제도를 수범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함. 또한 일단 지정이 된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정기준 및 결과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혹시 모를 지정 시점과 집행 시점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조치들도 함께 논의되고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EU DMA에서는 CPS 제공자가 충분히 신빙성 있는 주장(sufficiently substantiated arguments)으로 자신이 제3조 제1항의 게이트키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정량 지표는 충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이트키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위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DMA 제3조 제4항) 이 주목됨.

규제의 대상인 플랫폼 입장에서는 지정되기 이전에 반증을 통해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지정되고 나서 철회 내지 해제를 신청한 후 철회 또는 해제되는 것이 리걸리스크 및 사업활동 범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

공정거래법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이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추정과 같이 사후규제 단계에서 추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사업자의 반증이나 이의 제기를 굳이 법령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사건처리관련 일반규정에 따라 조사단계에서 그 같은 절차가 보장될 수 있음. 반면에 사전지정이 도입될 경우에는 일단 지정되고 난 후에는 이를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정 이전에 절차적으로 정량, 정성 지표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잠정적 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를 하는 방식이 보장되거나, 지정 이후 단계에서 당초의 시장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지정시점과 달리 사업자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지정 철회나 해제 절차를 면밀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임.

한편, EU의 DMA에서 주목되는 것은 Gatekeeper의 지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매출액(turnover)과 더불어 시가총액(750억 유로 이상)을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시가총액 기준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의 기준으로 도입하기 위한 논의들이 있었고, 실제로 한국 국회에 제출된 다수의 법안들이 시가총액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시가총액은 자본시장(capital market)에서 산출되는 지표이므로 실거래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산출해 내기 위한 지표로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임. 특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높더라도 발행주식 수가 적거나,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기업공개나 증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플랫폼의 시장력을 underestimate할 수 있고, 반대로 시가총액 자체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지배력을 overestimate할 우려도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가총액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시가총액을 반영한 사전지정 기준은 이 규제가 마치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이 아닌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일반집중(aggregate concentration)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함.

[Mikilaj Barczentewicz 교수님께 대한 질문]

(1) EU의 DMA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도입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 기준이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할 만한 일반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관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음.

(2) 한국에서도 온라인 중개 서비스(online intermediation service)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CPS(핵심플랫폼서비스) 가운데 온라인 중개 서비스(online intermediation service)에 직매입 중심의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여쭙자 함

2.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관련하여

DMA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나 자사 서비스 우선 적용, 서비스 간 개인정보 통합을 규제하고 있음. 또한 게이트키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른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다른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함.

메신저 플랫폼간의 상호운용성은 한국에서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플랫폼간의 혁신을 유도하며, 상대방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반면에 자신의 메시지 전송 인프라를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 등의 방식으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취약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됨.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 가운데는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을 암호화하거나 서버에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호운용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반대로 비밀대화 등에 관해 암호화가 추가 기능이고 의무사항은 아닌 경우에는 상호운용성이 좀더 쉬울 것임.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호운용성 규제 논의에서 기술개방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 보임.

[Thibault Schrepel 교수님께 대한 질문]

EU에 진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 DMA에서는 상호운용성에 대한 규제를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토론

3

오규성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토론문

오규성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티볼트 슈레펠 교수님께서는 정태적인 사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시면서 그 대안으로서 Computational Antitrust라 할 수 있는, 사후적 규제 집행의 강화 내지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규제의 경우에도, 보다 유연한 적응형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님의 발표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위들을 저지하면서도 기업들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규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앞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기존의 경쟁법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위들을 적시에 저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규제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EU의 DMA는 이러한 견지에서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EU 외에 온라인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방식의 입법을 실현한 국가는 없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가들은 전면적인 규제 방향 전환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도 DMA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었던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AICO")의 입법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고, 대만은 작년 말에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디지털경재경쟁정책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특정디지털플랫폼거래투명화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의 관점에서 일부 정보 공개 및 이에 부수하는 의무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입법만을 완료하였을 뿐 보다 포괄적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기간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의 DMA에 대한 우려 내지 비판, 즉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여러 행위 유형을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의 혁신 유인을 저해한다는 등의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는 이상, 제가 따로 이 내용

을 자세히 논의할 실익은 크지 않을 듯합니다. 저는 그보다는, 교수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즉 Computational Antitrust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국회 및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급성장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반경쟁적 행위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태를 '신속히' 제재하기 위해서는 DMA와 같은 사전규제 방식의 새로운 입법이 고려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슈레펠 교수님 등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직된 사전규제는 기업들의 '혁신' 유인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이상, 독과점 폐해를 조기 시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굳이 사전규제 방안을 택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미국이나 EU의 경쟁법과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규모유통업법 등 다양한 특별법까지 갖추고 있어 이미 촘촘한 규제 법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정위는 (비록 아직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 재판 계속 중으로 법집행의 적법성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다수의 국내외 유력 플랫폼 사업자들을 상대로 전세계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여 왔습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법제상으로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법집행에 규제 공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과 같은 신산업 분야의 경우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경쟁 환경 및 경쟁 수단의 변화로 인하여 경쟁당국으로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법집행의 난점을 이유로 사전규제 방안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규제우선주의 내지 행정편의주의로서 본말이 전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촘촘한 규제법제를 갖추고 있고 공정위 역시 기본적인 법집행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이상, 공정위가 기술 및 데이터 관련 역량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있어서도 법집행의 신속성과 적확성을 함께 도모하는 방안이 타당하고, 슈레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Computational Antitrust 역시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장에서 알고리즘, 인공지능,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기술분야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경쟁당국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판별하고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건을 식별해내고 이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내부 지식과 역량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공정위는 기

존에도 TF 활동 및 MOU 체결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을 해왔지만, 기술변화의 속도와 정보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사안별 협력에 국한된 전문가 참여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기술전문가가 법률전문가 및 조사인력, 경제분석 전문가와 상호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및 기술 관련 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추세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2019년 2월 ① 디지털 포렌식, ② 데이터 엔지니어링, ③ 데이터 사이언스, ④ 테크놀로지 인사이트, ⑤ 행동과학 허브의 총 5개 하위 팀으로 구성된 DaTA(Data, Technology and Analytics) 유닛을 설치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유닛은 CMA 수석경제자문관실 소속으로 (2022년 기준) 위와 같은 5개 팀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유닛의 주된 기능으로는, ① 맞춤형 전문 데이터 지원 및 기술자문, ②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사이언스, ③ 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경쟁당국의 업무 효율성 증진, ④ 행동과학 지식 제공, ⑤ 잠재적 미래 이슈 탐색 및 사건 파이프라인 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2023년 2월 기술실(Office of Technology)을 신설하여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데이터 과학, 디지털 시장, 인공 지능, 기계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분야에 걸쳐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중앙화되고 독립된 기술자 팀을 갖추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경쟁당국 등에서도 데이터 및 기술 관련 전문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요컨대,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경직된 사전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Computational Antitrust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기술 및 데이터 관련 인력과 자원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대한 적확하면서도 신속한 법집행을 달성할 수 있는 타당한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바르첸테비치 교수님께서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관련 규정들이 갖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문제점을 잘 설명해주셨으며, 경제적 목적의 사전규제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보거나 이미 해결된 것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귀중한 시사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DMA는 이용자의 데이터 이동성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쟁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합성을 증대하기 위한 수평적 상호운용성 의무로서 인스턴트 메세징 서비스(번호를 사

용하지 아니하는 대인 통신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의무(제7조)를 규정하였으며, 디지털 생태계 가치사슬에서 수직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봉쇄를 방지하고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이트키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 다른 서비스 및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운영체제 또는 가상비서 등을 통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의무(제6조 제7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유럽 집행위원회가 개최한 메세징 서비스 간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이해당사자 워크샵의 두 번째 세션에서 상호운용성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하여 종단간(end-to-end) 암호화 및 서비스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상호운용성을 달성할 수 있는 옵션 및 게이트키퍼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게이트키퍼에게 API를 통한 접근을 보장하게 하거나 보안 규정의 표준화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구현과정에서 바르첸테비치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효과적인 상호운용성 보장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가별 규제 수준의 차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생태계나 기술표준이 파편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토론

4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memo

memo

memo

memo

International Seminar on
Online Platform Regulatory Trends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

국회의원 김 희 곤 ICT법경제연구소 ICT LAW & ECONOMY INSTITUTE K·internet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